#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권칠승·송옥주·민병덕

서영교 · 김종민 · 임미애

홍기원 · 강경숙 · 문금주

임호선 · 이병진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·개정 ·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·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,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 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감사원법」에 감사원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 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 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(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감사에"를 "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사 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고,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충분한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시기・방법・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2조(감사원규칙) 감사원은 <u>감</u>	제52조(감사원규칙) <u>①</u>		
<u>사에</u> 관한 절차, 감사원의 내부	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		
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	<u>위에서 감사에</u>		
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		
	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		
	입법예고를 하고, 이해관계자로		
	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		
	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		
	있게 추진하여야 한다.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의		
	시기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		
	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		
	<u>정한다.</u>		